

#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

## 1. 목적

본 규정은 SK 가스 주식회사(이하 '회사')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

-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사전예방을 통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소집 : 안건 발생 시 대면, 서면의 형태로 위원장이 수시 소집
- 거래금액이 5억원 이상(단, 경쟁입찰은 10억원 이상)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구매부서장은 내부품의를 득하기 전에 내부심의위원회 소집 또는 전자결재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구매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## 3. 심의위원회의 구성

- 위원장 : 전사 구매관리 주관부서 담당임원
- 상임위원 : 업무지원팀장, 기술안전팀장, 대외협력팀장, 법무 TF 팀장
- 비상임위원 :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팀장
- 간사 :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

## 4. 심의 내용

- 협력업체 등록/관리  
>협력업체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
>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

- 구매관리

>품목별로 정해진 구매부서에 의해 구매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 심의

>구매요청부서 (또는 수요부서)에 의한 구매업무의 사전집행이나 직접적인 업무관여 여부 심의

>구매관리규정의 수의계약 허용 외의 건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

>거래금액 5 억원 이상 (단, 경쟁입찰은 10 억원 이상)의 개별 건에 대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심의

-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 여부

- 부당한 거래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

-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 강제금지 위반 여부

-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
- 관계사와의 수의계약일 경우 타당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